



#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해외건설협회 해외공사 상황보고 준수알림

1. 관련근거

- 가. 해외건설촉진법 제 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 나. 동법 제 13조(해외공사 상황보고)
- 다. 동법 제 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 라. 해외건설협회(사업)-256호 「해외공사 상황보고 준수안내」

2. 해외 사업 추진시 관할 법령인 해외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한 각종 제반보고 의무를 준수해야하는 바, 법령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해외건설협회 해외공사 상황보고절차를 공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외공사 수행절차 및 제반보고사항

해외공사 수행단계	신고 및 보고사항	준수내용
공사정보 입수 및 수주활동	수주활동상황보고	도급공사: 입찰예정일 10일전까지 개발형공사: 공사 시행개시일 20일전까지
	현지법인설립신고	설립(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체결	계약체결결과보고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착공 및 시공	시공상황보고	매 반기 종료후 30일 이내
	해외공사실적보고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2월 15일까지
공사내용변경 및 제반사고 보고	공사내용변경보고/ 제반사고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준공	준공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현지법인 설립(인수): 설립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현지법인설립(인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

나. 과태료: 미준수 혹은 허위보고시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능  
(해외건설촉진법 제41조 관련)

다. 관련 신고 및 보고사항 접수: 해외건설협회 관련부서  
(담당자 연락처 불임참조)

- 붙임: 1. 해외건설협회 시행문 1부.  
2. 해외건설협회 시행문 붙임자료 1부. 끝.

---

주임 **김신희**

처장 04/13  
**김남욱**

협조자

시행 해외사업처-1031 (2018.04.13.)

접수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http://www.seoulmetro.co.kr

전화 6311-8935 전송 / 2140024@smrt.co.kr / 대시민공개

부패 '0'의 공기업!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인사 이권청탁 배격